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99
----------	-------

발의연월일 : 2025. 10. 24.

발의자 : 안도걸 · 임호선 · 조인철
전용기 · 박홍배 · 박민규
김우영 · 정진욱 · 정준호
복기왕 · 손명수 · 박지혜
조계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토지 및 건물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3년간 거치한 후 3년간 균분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인상 제한, 고정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법인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의 대체취득 요건은 학교법인이 과세이연을 활용하여 재정을 확충하는 데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음. 토지의 경우 대체취득 시 수익률이 높지 않아 학교법인이 대체취득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토지 및 건물은 그 특성상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것이 어렵고 과세이연 기간도 고정되어 있어 학교법인이 재정을 유연하게 운용하는데 제약이 됨.

이에 학교법인이 대체취득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유가증권으로 확대하고 유가증권을 제외한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대체취득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새롭게 취득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과세이연 기간을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한 시점으로 변경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16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6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1년”을 “2년(유가증권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해당 금액은”을 “이 경우 새롭게 취득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그 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새롭게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② ~ ④ (생략)	-----. -----. -----. -----. -----.
------------	--